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11. 26 선고 2024가단1661 판결 [임대보증금 반환 청구]

## 전 문

원고A

피고B

변론 종결 2024. 10. 15.

판결 선고 2024. 11. 26.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21. 1. 7. 피고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C건물 D호에 관하여 보증금 4억 3,000만 원, 기간 2021. 3. 31.부터 2023. 4.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24. 3. 1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피고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였다.

##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의 갱신이 되었다가 이 사건 소장 부분이 송달된 2024. 3. 21.로부터 3개월이 경과된 2024. 6. 21.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4억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판사최은주**